

2017년도 용인소방서 종합감사 결과

I 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2017. 11. 27. ~ 12. 5.(7일간)
- 감사분야 : 2014년 11월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
- 감사결과

감사결과			처 분 계 획								
행정상	신분상	재정상	행정상(건)		신분상(명)			재정상(천원)			
			시정	주의	징계	경고	주의	회수	과태료		
16건	14건(32명)	2건(1,099천원)	5	11	-	5	27	599	500		

II 주요 지적사항

- **[인사·행정] 교육훈련성적(전문교육 및 전문능력) 평정 부적정 등**
 - (입교전 사이버교육 평정 부적정) 교육과정을 집합교육(3일 이상)과 사이버교육을 혼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 7시간으로 하여 시간당 0.04점씩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
 - 지방소방☆ ♥♥♥은 “소방시설(기계)” 전문교육 과정을 2015.03.23. ~ 2015.03.27. (5일) 수료하였고, 이 집합교육 이전에 입교전 사이버교육('15.02.16. ~ '15.03.13.)을 이수. 집합교육과 혼합한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의 7시간으로 인정하고 시간당 0.04점씩 산정하여 0.28점으로 평정하여야 함에도 0.25점으로 잘못 평정.
 - 지방소방☆ ♥♥♥ 또한, “소방시설(전기)” 전문교육 과정을 2016.11.14. ~ 2016.11.18. (5일) 수료하였고, 이 집합교육 이전에 입교전 사이버교육('16.10.10. ~ '16.11.04.)을 이수. 집합교육과 혼합한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의 7시간으로 인정하고 시간당 0.04점씩 산정하여 0.28점으로 평정하여야 함에도 0.25점으로 잘못 평정.

- (전문능력점수를 자격증 가점으로 평정) “전문능력성적”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·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하며, 컴퓨터활용능력 2급의 자격증은 전문능력성적으로 1.5점의 평정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,
 - 지방소방☆ ♥♥♥가 2016.04.29. 취득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에 대하여 2016년 상반기, 하반기, 2017년 상반기 등 3회에 걸쳐 전문능력성적 평정을 하면서 전문능력 점수로 1.5점을 부여할 수 있는데도, 자격증 가점으로 0.3점을 부여
- ❖ 【관련규정】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(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)

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(전문교육 평정)

○ [예산·회계]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부적정

- (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 도급계약)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 다만,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대하여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으나,
- 전문공사업 중 “실내건축공사업” 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하는 공사금액 15,400천원의 “본서 지하 1층 리모델링” 건에 대하여 자격이 미달되는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.
- (계약체결 시 인지세 미징구)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, 3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2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,
- 계약서의 기재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“본서 지하 1층 리모델링” 공사 건에 대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세 2만원이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약문서를 작성함.

❖ 【관련규정】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(건설공사의 시공자격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(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)

인지세법 제3조(과세문서 및 세액) 및 제6조(비과세 문서)

○ [재난대응·안전] 소방활동자료조사 미작성 등 업무 소홀

- “소방활동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특급·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·대형화재취약 대상은 연1회 이상, 2급·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2년에 1회 이상,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필요시에 소방활동자료조사를 하여야 하며,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부서장(센터장 또는 팀장)까지 결재를 받아야 한다”고 규정되어 있음에도,
- 현장대응단 소방활동자료조사 담당자 지방소방☆ ♥♥♥ 등 2명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11,690개소(2015년 4491개소, 2016년 3412개소, 2017년 3787개소)의 소방활동자료조사를 실시하면서 소방활동자료조사서 및 소방활동정보카드 정비현황을 확인·점검하지 않았고, 각 센터 담당자(조사자)가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부서장(센터장)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도 업무담당자로서 규정 안내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함.
- (소방활동자료조사 조사서 미작성) “소방활동자료조사는 소방시설의 완공검사(감리 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)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음에도,
- 현장대응단 소방활동자료조사 담당자 지방소방☆ ♥♥♥ 등 2명은 2017년 소방안전 관리대상물(특급, 1급 표본조사) 중 소방활동자료조사서 8건 미작성, 소방활동정보 카드 18건을 수정하지 않았으며, 2015년(7~8월), 2016년(9~10월) 대상물 중 기간을 정하여 표본조사한 바 23건(2015년 10건, 2016년 13건)은 30일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등 각 센터에서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하고 있는데도 확인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,
- ○○안전센터 지방소방☆ ♥♥♥ 등 6명은 △△△△ 등 6개소(2016년 1개소, 2017년 5개소)에 대하여 소방활동자료조사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.

❖ 【관련규정】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(소방활동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)

○ [예방·민원] 완비증명서 발급(자동문 설치기준) 부적정 등

- (완비증명서 발급 부적정) 다중이용업소의 주된 출입구는 화재감지기와 연동, 정전 시 자동·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일 경우에만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도,
- “△△△△(일반음식점)”은 주된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설치하면서 화재감지기가 아닌 비상벨설비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임에도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
- (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서류검토 소홀)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장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에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·명세서,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비상구는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(밖으로 미는)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데도,
- “△△PC방(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)”등 2개소의 안전시설등 설계도서에 비상구가 당기는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적합 통보
- (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유지·관리 소홀)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장에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·유지하여야 하며,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하는데도,
- “△△△△학원”은 비상구 앞 복도를 임의 구획하여 강의실로 사용 중

❖ 【관련규정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(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)

수범사례 1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

□ 추진개요

-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('17.2.5.시행)
-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('12.2.5.시행)
-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4352호('16.12.16.시행)
- 취약계층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근거마련

□ 현황 및 실태

- 최근 5년 평균 화재 중 주택화재 19.8%, 인명피해 43.7% 차지
- 주택화재 중 일반주택 화재가 53%, 인명피해는 46.2%를 차지

연평균	전체화재		주택화재		일반주택화재 (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)	
	화재(건)	인명피해(명)	화재(건)	인명피해(명)	화재(건)	인명피해(명)
경기도	9,873	65	1,875	39	1,272	33
용인	505	29	100	13	53	6

□ 추진사항

- 『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(안)』 제정 관련기관 협의('17.5월)
⇒ 용인시의회 및 담당부서(시민안전과)
- 용인시의원 초청 안전체험 행사 및 조례제정 설명회 추진('17.9월)
-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조례제정 의원발의 협의('17.10월)
- 추진경과(*'17.12.19 공포예정)
- 조례안 발의('17.11月) ⇒ 조례안 예고('17.11.8.) ⇒ 조례안 가결('17.11.22.)

□ 기대효과

-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(재난관리기금 매년 3,000만원)
⇒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'18년 재난취약가구 DB구축 및 운영
-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예방 및 화재로 인한 피해저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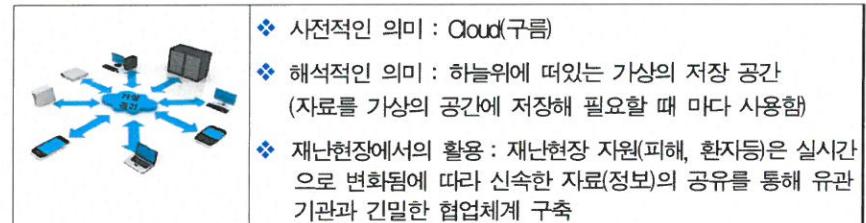
수범사례 2 스마트 통제단 활성화를 통한 대응 능력 강화

□ 추진배경

- 재난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시 기관별 협력 대응체계 구축
- 기존 운영방식 탈피를 통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능력 강화

□ 추진계획

① 클라우드 공유 시스템을 재난 현장 적용



② 소방기관(긴급구조통제단)내 운영능력 향상

- (현실화) 통제단 운영시스템의 전산화(노트북, 태블릿) 및 운영 인력 부담 개선
- (효율화)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으로 각 부별 작성 및 취합 과정의 개선
- (단순화) 각종 회의(상황판단 및 보고)시 취합사항 브리핑 / 서류(종이)없는 회의
→ 긴급구조 통제단의 내실화를 통한 재난대응능력 강화[초기→중기(통제단)]

③ 유관기관 상황전파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원활한 현장지원 구현

-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재난 발생시 유관기관 간 대응능력(예산, 장비등) 향상
- 응급의료소(보건소장)의 환자 처치/이송 현황 체계화 및 정확성 증대
→ 재난대책본부 활성화를 통한 재난대응능력 강화[중기(통제단)→후기(시청)]

□ 기대효과

- 긴급구조 통제단 효율화를 재난현장 초기 컨트롤 타워 구축에 기여
-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사회에 이바지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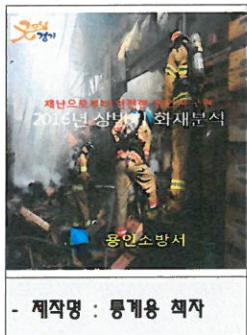
수범사례 3 화재 고위험대상 맞춤형 화재 저감 대책

□ 추진개요

- 화재통계 정밀분석을 통한 맞춤형 화재저감 대책 수립·시행
- 재난안전 취약분야 소방특사경 수사활동 및 안전관리 강화

□ 추진현황

- 화재발생 통계 정밀 분석(연 4회)
 - 화재발생 원인별 유형분석, 지역구별 발화 요인별·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분석을 통한 예방대책 수립 및 홍보 책자 제작·배부
 - 화재피해주민센터 지원 리플릿 제작 및 화재현장 피해자 안내·배부
- 소방안전『5대악』근절을 위한 기획수사 실시(연 4회)
 - 소규모 공장 및 창고시설, 소방시설 관리업체 실태 단속
 -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한 선제적 기획수사 실시



- 제작명 : 통계용 책자



- 제작명 : 화재예방스티커



- 제작명 : 리플릿

□ 시사점 및 기대효과

- 화재원인 및 예방대책 홍보로 인한 화재발생 저감 및 안전의식 고취
- 재난으로부터 정신적 혼란에 빠진 시민에 대한 피해복구 절차 안내로 소방서 중심의 대민 신뢰도 향상